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437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문진석 • 이수진 • 강준현

이정문 • 박수현 • 어기구

강훈식 • 홍기원 • 김남희

진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태풍·홍수 등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 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 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도급인은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계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

사기간 연장 결정에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받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 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하도급 계약의 체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일정 금액은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다.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과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하도록 함(안 제72조제7항).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 3.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관리비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건 설공사 관계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⑦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 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	
장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제3호에 해</u>
	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
	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
	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
	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안전관리 인력ㆍ시설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이 중
	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u>경우</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
	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 저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 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 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⑤ (생 략) <u><신 설></u>

<신 설>

세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도급인이 하
도급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사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 관계수
급인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⑦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의
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추가적인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건설 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각각 분담한다.